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 입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법률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병역신고 관련 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 『통계법』 제33조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
 - 『형사소송법』 제47조
-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정보보호 또는 공사경영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 부패행위 신고자, 피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진정인 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공사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내부공익신고 신고서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의, 회의록
- 공사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또는 미 검증된 자료, 공사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그밖에 공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공사 고객, 이해관계자,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고객 관련 업무 내용 또는 민원내용의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정보 등을 포함한다.
- 채용후보자 명단,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관광개발 및 관광시설 공사 등 각종 시행계획